공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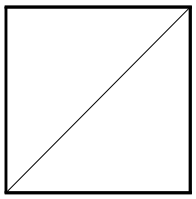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21호
의 결 연 월 일	2023. 2. 1. (제2차)

의결사항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2. 1.

1. 의결주문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 중 2022년 제2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022.11.23.)에서 의결한 항목 이외에 분리하여 처리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다음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은행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다 음 -

가.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과태료 1억원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7차 제재심의위원회(2022.7.21.) 심의필

○ 제2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2023.1.27.) 심의필

<별지>

㈜국민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억원 부과

- 조치사유 : 가.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

- 법적근거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7의5, 제5항 제5호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2. 조치사유

【 국민은행 】

가. 허위자료 제출에 의한 검사 방해

□ 「은행법」 제43조의2, 제48조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월~20◑◑.◑월 기간 중 발생한 ◆◆◆◆◆펀드와의 '손실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참고 1>)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규자진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 🍎건을 고의로 조작(<참고 2> 참조)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음

* 손실이전 파생상품거래(HRR거래) : 기존 파생거래 만기시 거래상대방의 유동성 부족 등에 따라 결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존 거래의 손실을 신규 파생상품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
(불합리한 가격 산정 및 손실확대 가능성 등 불건전 영업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

- ◎◎◎◎◎◎부는 20■■.■.■. 은행장에게 보고한 "파생상품거래 한은 신고 미준수 관련 이슈사항 보고" 문서를 제출하면서 보고서 본문과 별첨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금감원에 위규를 자진 신고토록 안내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 20■■.■.■. 은행장에게 보고한 "♧♧♧♧♧♧♧펀드와의 파생상품(HRR)거래 이후 관련 추가 보고" 문서를 제출하면서 보고서 본문의 "한국은행 고위층(국장급) 유선 통화" 사실을 삭제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반이 위규사항 발생경위와 그에 대한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음

* ① 소관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은 당시 위규 자진신고가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으나,

② 위와 같이 보고문서를 조작한 결과 “한국은행에 신고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한국은행 해당팀 직원은 사후보고하도록 안내”, “한국은행에 재차 문의하였으나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보고하도록 재차 안내 받음” 등의 내용만 남게 되어

③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국민은행의 귀책사유가 치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음

④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장이 ‘위규자진신고 필요 의견(韓銀)’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오인케하여 검사반이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

<참고 1> **국민은행의 손실이전 파생상품 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면, 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체결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고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하는 거래타당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 파생상품거래신고서 2부, 사유서, 파생상품계약서 초안, 신청인 및 상대방 실체확인서류, 내부적으로 적절한 검토와 통제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류, 서약서, 당해 파생상품거래의 필요성 및 가격적정성 입증서류, 현재까지의 손실액 규모, 실수요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국민은행 ◎◎◎◎◎◎부는 20△△.△.△.~20△△.△.△. 기간 중 ♠♠♠♠♠♠♠이 운용하는 ★★★★★ ★★★★★ ★★★★ ▶▶호 펀드 등의 유동성 부족으로 기존 파생상품거래 만기시점에 결제가 이행되지 않아, 기존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파생상품거래 ◕건 (계약금액 USD ♪♪♪♪♪♪.♪♪)**을 취급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음

○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국민은행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이첩**하였음

<참고 2> **은행장 보고문서 조작 내용**

구분	은행제출자료	원본문서
4.2. 보고서 본문	- 이후 법률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이전 안내가 법령의 내용과 충돌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한은에 재문의 함	- 이후 **법무법인 □□을 통해** 법률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이전 안내가 법령의 내용과 충돌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한은에 재문의**한 결과 금감원에 위규 신고하고 신규 신고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 받음**
	- ☎☎☎☎☎☎☎☎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담당자에 연락하여 기존거래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 ☎☎☎☎☎☎☎☎은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담당자에 연락하여 기존거래에 대해 소급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한국은행측은 금융감독원에 미신고에 대한 위규자진신고 절차를 거친 후 올 것을 권유. 한국은행은 위규자진신고 접수 이후 사후신고접수 수리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
	- ☎☎☎☎☎☎☎☎은 해당 거래가 한국은행의 잘못된 안내에 따른 신고 누락으로 인한 것이므로 한은에 이의제기와 동시에 해결방안 모색 중	- ☎☎☎☎☎☎☎☎은 해당 거래가 한국은행의 잘못된 안내에 따른 신고 누락으로 인한 것이므로 한은에 이의제기와 동시에 해결방안 모색 중**(당행도 한은 방문하여 시급한 해결 요청함)**
4.2. 보고서 별첨	- **< 전체 페이지 삭제 >**	❑ HRR거래 - [redacted] 및 [redacted] 사모사채에 투자한 펀드는 투자자산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선물환 만기시점에 선물환을 정산하기 위한 펀드 내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었음. - 20[redacted]년[redacted]월 당행 현지거래 최초만기건 결제 미이행 발생[redacted], [redacted]월 [redacted]일 당행 장외 파생상품거래 결제 미이행 통지. - 위 사건으로 인하여 선물환 계약 이행이 어려운 펀드에 대한 *Historical Rate Rollover 거래(이하 'HRR거래') 실행. - 최초 [redacted]의 요청 시 당행은 내부 검토 후 '한국은행 사전신고' 사항임을 안내. -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담당자는 [redacted]의 HRR거래 사전신고 요청 질의에 신고필증 발급이 아닌 HRR거래 실행 후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한 외환보고서 사후 제출로 안내하였음. - 이후 HRR 진행시 당행은[redacted]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받아 취합중이며 [redacted]은 건별로 예탁원 전산을 통하여 사후보고 중. * Historical Rate Rollover 거래란 기존 선물환 거래의 결제일을 연장하기 위해 실행하는 거래이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Rollover시 현물환 환율)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손익을 신규계약에 반영하여 연장하는 거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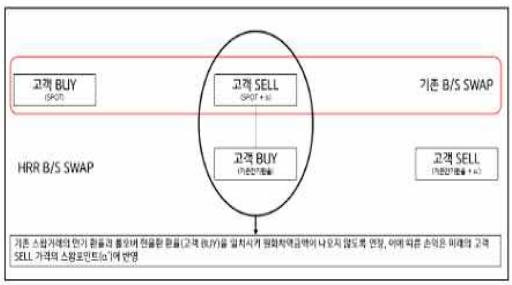 ❑ 이슈 발생 현황 - [redacted]은 20[redacted]년 [redacted]말, 타행과의 HRR거래 실행을 위한 법무법인[redacted]의 검토 결과 한국은행의 안내가 잘못되었고, 당행과 체결한 기존 HRR거래를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금융감독원 위규 신고' 접수 후 치유 검토 시작 - 본건이 [redacted]의 신고 절차 위반으로 확인시 당행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후속 조치 필요한 상황
4.7. 보고서 본문	- 한국은행 1차 방문→외환심사팀 면담 - **< 삭제 >**	- 한국은행 1차 방문→외환심사팀 면담 - **한국은행 고위층(국장급) 유선통화** **√ 외환심사팀에 사실관계 파악 및 재검토 하도록 권유 요청/확답**

<참고 3> **제재대상 사실 이외의 검사방해·지연 행위 등**

□ 국민은행은 위 제재대상 사실 이외에도 HRR관련 위규행위 및 ▤▤▤▤▤▤ 관련 사항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반의 사실관계 파악에 혼선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으로 검사 업무를 지연시켰음

○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환매중단 펀드와의 파생거래 사유 등에 대한 수차례 자료요구에 대하여 HRR 거래 사실을 적시하지 않다가, 검사반이 자금결제 관련 공문을 확인하여 HRR 때문임을 인지한 후에야 해당 사실을 인정

○ 검사반은 "▤▤▤▤▤▤▤▤와의 HRR거래 결정 관련 보고문서, 서류철 등 관련 문서 일체(ㅎ.ㅎ.)", "HRR거래 관련 보고문서, 서류철 등 관련 문서 일체(ㄴ.ㄴ.)" 등 손실이전 파생상품거래 관련 보고문서를 지속 요청하였으나,

- ✈✈✈✈✈✈부는 '✻✻✻✻✻✻✻의 상환 지연으로 개인투자자는 피해(▽▽여명, ♬♬♬원)가 예상되지만, 개인투자자보다 선순위인 국민은행은 HRR거래를 포함한 ✻✻✻✻✻✻와의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대규모 이익이 예상되며, 펀드판매사와 달리 평판리스크 우려가 없다'는 내용 등이 담긴 주요 은행장 보고문서 ◓건(<참고 4> 참조)을 제출하지 않다가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에 지연 제출하였음

제출일시	제출내용	방해내용
20☂☂.☂.☂. 20☽☽.☽.☽. 20ϟϟ.ϟ.ϟ.	환매중단 펀드와 파생거래 사유 등	HRR, 손실이전 파생상품거래 등 미기재 ('자산회수가능성을 감안한 롤오버' 등으로 기재)
20✉✉.✉.✉.	(검사반) 은행단말기 통해 HRR 거래체결에 대한 은행 내부 품의문서('₩.₩월)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경위 요청	
20◍◍.◍.◍.	HRR거래 경위서	"금감원 위규 자진신고 필요" 및 "상근감사위원 등 최고경영진 보고" 등의 내용을 고의로 누락
20卌卌.卌.卌.	은행장 보고문서 (20⊗⊗.⊗.⊗. 1차 보고)	금감원 위규신고 필요 내용을 고의로 삭제 등
20✇✇.✇.✇.		금감원 위규신고 관련 이슈 발생 현황 삭제
20ǂǂ.ǂ.ǂ.	은행장 보고문서 (20▢▢.▢.▢. 2차 보고)	"한국은행 고위층(국장급) 유선 통화" 사실 삭제 검사반의 추궁 끝에 지연 제출
20〃〃.〃.〃.	은행장 보고문서 원본 ●건 (20◔◔.◔.◔. 1차 및 ◔.◔. 2차)	1차 및 2차 은행장 보고서 조작사실이 확인된 후 원본 제출
	은행장 보고문서 ⓫건 (20□□.□.□, □.□, □.□, □.□ 보고)	20☼☼.☼.☼. 및 ☼.☼. HRR거래 관련 보고문서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다가 ☼.☼. 되어서야 제출(지연제출)

<참고 4> **지연제출한 은행장 보고문서 주요 내용**

보고일	보고서명	주요 내용
'20.4.10.	◆◆◆◆◆◆◆◆ 펀드 관련 언론보도 및 당행 환헤지 거래 현황 보고	- **◒◒◒◒◒ 상환 지연(㊦㊦명, ♩♩♩원)** 언론 보도 - 당행은 ◒◒◒◒◒에 𝄞𝄞𝄞달러 장외파생 보유 중 (상환지연펀드 관련 HRR거래 규모는 ♫♫달러) - **당행은 현재 환율로 파생 정산시 총 ♬♬♬원의 이익 발생** (**상환지연펀드 관련 HRR거래는 ♪♪♪원 이익 발생**) - 펀드와의 계약에 따라 은행은 개인투자자보다 선순위 - **펀드자산의 ##% 수준 청산가치만 잔존해도 당행 파생상품 결제 문제 없음(개인투자자 원금 전액 손실)** - 당행은 판매자와 달리 단순 환헤지거래만 보유 중으로 당행의 **평판리스크 우려는 없음** - 파생 만기 도래전 조기/일부 결제 유도하여 익스포져 축소 예정
'20.5.28.	◆◆◆◆◆◆◆◆ 펀드 만기연장시 Nav 하락에 따른 당행 환헷지 관련 이슈 사항 검토	- ◒◒◒◒◒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 및 피해자 법적조치(금감원 분쟁조정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착수 언론 보도 - 당행은 ◒◒◒◒◒에 ♯♯♯달러 장외파생 보유 중 (상환지연펀드 관련 HRR거래 규모는 ♩♩♩달러) - 조기결제 : 펀드 해외 잔고에서 회수(♪♪♪달러) - **당행은 현재 환율로 파생 정산시 총 ♬♬♬원의 이익 발생** (**상환지연펀드 관련 HRR거래는 ♮♮♮원 이익 발생**) - 펀드 Nav 하락해도 은행은 개인투자자보다 선순위이며, **펀드자산의 ???% 수준 청산가치만 잔존해도 당행 파생상품 결제 문제 없음** - **HRR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 결과 관련 법규 없음** - **펀드 피해자의 당행 대상 소송 가능성 검토 결과 가능성 적음** - 파생 만기 도래전 조기/일부 결제 유도하여 익스포져 축소 예정
'20.6.19.	◆◆◆◆◆◆◆◆ 펀드 당행 환헷지 관련 동향보고	- ◒◒◒◒◒ 판매사가 중요사항 고지 없이 펀드판매 지속 - 당행은 ◒◒◒◒◒에 ♯♯♯달러 장외파생 보유 중 (상환지연펀드 관련 HRR거래 규모는 ♩♩♩달러) - **당행은 현재 환율로 파생 정산시 총 ♪♪♪원의 이익 발생** (**상환지연펀드 관련 HRR거래는 ♬♬♬원 이익 발생**) - 최근 펀드 Nav가 ♭♭% 수준이나 **당행 파생상품 결제 문제 없음** - 파생 만기 도래전 조기/일부 결제 유도하여 익스포져 축소 예정
'20.7.8.	◆◆◆◆◆◆◆◆ 펀드와의 환헷지 거래 조기 종료 보고	- 기업은행 판매한 ◒◒◒◒◒ 상환 지연으로 인해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등 개인투자자 피해 발생 - 당행은 ◒◒◒◒◒와의 파생거래 익스포져 지속 축소 - '□□.□.□. 자산운용사와 협의하여 **기초자산 매각 금액으로 당행 파생상품 잔액 ♫♫♫달러를 개인투자자보다 우선 결제**(펀드 해외잔고에서 회수) - 최근 이슈가 된 **상환지연 ◒◒◒◒◒와의 파생거래 전액 결제로 당행의 결제관련 이슈 없음**

< 붙임 >

관계 법규

□ 「은행법」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17. 4. 18.>

1.~7의4. (생략)

7의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은행

8.~11. (생략)

②~④ (생략)

⑤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18. 12. 11., 2020. 5. 19.>

1.~4. (생략)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8.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5. 19.>

[전문개정 2010. 5. 17.]

□「은행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6. 28., 2020. 8. 19.>

[본조신설 2014. 2. 11.]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버. 은행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의5	10,000
서.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법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 제5항제5호	2,000

□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

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8., 2010. 11. 12., 2014. 9. 1., 2017. 10. 19.>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 9. 1., 2017. 10. 19.>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4) (삭제)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신설 2017.10.19.>

(6)~(7) (삭제)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2. 27.>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1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개정 2020. 5. 13.>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 ·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개정 2020. 5. 13.>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 · 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신설 2005. 8. 26., 2020. 5. 13.>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7., 2005. 8. 26., 2006. 8. 31., 2008. 12.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2016. 3. 15., 2020. 5. 13.>

1. 삭제 <2014. 10. 31.>

2. 삭제 <2014. 10. 31.>

3. 삭제 <2014. 10. 31.>

③ 감독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제재의 종류를 지정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양정결과가 주의요구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4. 2. 27., 2008. 12. 31., 2014. 7. 23., 2014. 10. 31.2015. 6. 24., 2016. 3. 15., 2020. 5. 13.>

1. 삭제 <2016. 3. 15.>

2. 금융관련법규상 신용공여 금지위반 또는 한도초과 행위, 금융투자업자의 증권 임의매매·불공정거래행위,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제공·무자격모집위탁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

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 <개정 2006. 8. 31., 2008. 9. 1., 2008. 12. 31.,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3. 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감독 및 검사 방해·거부·기피 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개정 2006. 8. 31.,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4.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자율적인 제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 8. 31., 2014. 7. 23., 2014. 10. 31., 2015. 6. 24.>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개정 2010. 1. 5., 2014. 7. 23.>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개정 2010. 1. 5., 2015. 6. 24.>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개정 2010. 1. 5.>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개정 2010. 1. 5., 2014. 7. 23.>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개정 2010. 1. 5., 2020. 5. 13.>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개정 2010. 1. 5.>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신설 2020. 5. 13.>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신설 2020. 5. 13.>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5., 2010. 8. 31. 2014. 7. 23.>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 2. 27., 2010. 1. 5.>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3. 15.>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

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5.>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 행 과	은행검사1국
연 락 처	02-2100-2982	02-3145-7062